

삼척시농업기술센터(축산과)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삼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5일

삼척시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인원	담당업무	근무처
거점소독시설 운영요원 (일반근로자)	2명	○ 거점소독시설 운영 ○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	거점소독시설 ※삼척시 강원남부로 4546(등봉동)

2. 응시자격

가. 지역제한 :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자

나. 성별제한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다. 응시연령

-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

라. 채용기준

- 삼척시민 1세대 1인 신청 원칙
- 중도포기자 발생 시 예비 우선 순위자 선발

마. 응시제한 : 전염병, 질병 등 업무수행에 곤란함이 있는 자, 상용 또는 기간제근로자(일용인부 포함)로 근무하면서 근무불성실자로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된 사실이 있는 자

바. 우대사항

- 채용분야 유경험자(서류심사 기준표 참고)
- 지역주민(등봉동, 채용인원 1/2 이내 우선 선발)

사. 「삼척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13조의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삼척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(채용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3. 근로조건 및 보수

가. 근무기간 :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8개월

나. 근무조건

- 교대근무 4조 3교대(주40~48시간)
 - 휴일근로수당, 야간수당
 - 주, 월차수당 지급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
 - 후생복지 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- ※ 사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조치(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수 지급)

다. 보 수

- 1일 통상임금 73,280원(2022년 최저임금단가 적용)
- ※ 2023년 76,960원(2023년 최저임금단가 적용)

라.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「삼척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등에 따름

4. 원서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삼척시청 홈페이지 고시/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
나. 접수기간 : `22.12.5.(월) ~ `22.12.12.(월) 18:00 접수분까지 유효

다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전자접수

- 전자접수 : evergreat@korea.kr

라. 접수장소 :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

※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

※ 전자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

5.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[별지 제1호 서식] 1부

나. 이력서 [별지 제2호 서식] 1부

다.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[별지 제3호 서식] 1부

라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) 1부

마.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
바. 기타 서류심사 관련 증빙자료 각 1부

사.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(최종합격자) 각 1부

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
6. 선발절차 및 합격자 결정

가. 1차 심사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등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심사하여 2차 심사 응시 적격자 선발

※ 1차 서류심사 기준 : 서류심사 기준표 참조

⇒ 서류심사 기준표 적용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임

※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표에 따라
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
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`22.12.13.(화) 예정

※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지

나. 2차 심사 : 면접시험

○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
○ 일시/장소 : `22.12.15.(목) 예정, 장소 - 근덕면 맹방해변로 49

※ 면접일정은 인원 수, 면접장 마련 등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

※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다.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통지

○ 일시 : `22.12.16.(금) 예정

※ 면접 등 앞선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지

7. 유의사항 및 기타

가.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나.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
바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다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
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라. 최종선발은 신원조회, 범죄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(채용 신체검사) 결과 부적
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취소 후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마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
예정입니다.

바.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

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미채용자의 채용서류는 청구 반환기간인 15일 이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.

사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면접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.
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부서 (☎ 033-570-3397) 또는 아래 기재된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분야	해당부서	연락처
○ 거점소독시설 운영	축산과 (가축방역부서)	033-570-3397

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기준표

선발기준	판단기준		배점	비고
합 계			100	
삼척시 주민등록기간 (15점)	10년 이상		15	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)
	5년 이상 10년 미만		10	
	5년 미만		5	
가축방역·소독 근무경력 (40점)	5년 이상		40	경력증명서 (기간 및 업무 구체적 명시)
	3년 이상 5년 미만		30	
	1년 이상 3년 미만		20	
	6개월 이상 1년 미만		10	
기계설비 운용 (30점)	5년 이상		30	경력증명서 (기간 및 업무 구체적 명시)
	3년 이상 5년 미만		20	
	1년 이상 3년 미만		10	
	6개월 이상 1년 미만		5	
취업취약계층 (5점)	해당자		5	해당서류 (중복인정 불가)
다자녀가구 (10점)	주소지가 삼척시 관내인 경우에 한해 인정	만19세미만 자녀 3명 이상	10	주민등록등본 등
		만19세미만 자녀 3명 미만	5	

※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“붙임” 참조

※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점 부여

[붙임]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

- 1) 저소득층 :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
- 2)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
 - 고용센터,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
 -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
 - 만19~39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, 고용된사업장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
- 3)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증명서
- 4) 고령자(만 55세 이상) :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
- 5)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, 상이군경회원증
- 6)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- 7) 결혼이주자
 - 국적 취득 전 : 외국인등록증(F2 또는 F-5, F-6비자) 및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
 - 국적 취득 후 :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